

영등포구의회  
제20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3. 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37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,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등이 신규 건립에 따라,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, 사용료 징수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 현황 정비(안 제8조, 별표1, 별표2)
- 나.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 규정  
(안 제9조, 별표3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 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,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등의 신규 건립에 따fms,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근거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8조, 별표1, 별표2에서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9조, 별표3에서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세부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우리구 체육시설이 확충 정비되고, 사용료 및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, 효과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아울러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5조(전문체육시설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17.>

**제6조(생활체육시설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.17.>

##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**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

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4.1.7., 2015.1.20.>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·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.]